

◆부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  
한조례안심사보고서◆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1년 10월 15일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청
- 다. 회부일자 : 1991년 10월 15일
- 라. 상정일자 : 1991년 10월 15일  
1차 본회의 의결로 일반행  
정특위에 회부
- 마. 심사일자 : 1991년 10월 16일 - 10월 17  
일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녹지과장 이한철)

가. 제안이유

○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도시공원을 합리  
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내의  
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고 녹지를 효율  
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중  
개정령이 대통령령 제 131013 호로 '90.  
9.15 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'91.5.10  
일자 경기도로부터 도시공원의 점용허  
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준칙이  
시·군에 시달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  
례를 제정하게 되었음.

나. 주요골자

- 도시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  
의 범위를 동조례 제 4조 제 1, 2, 3  
항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,
- 점용허가의 기준을 조례 제 5조에 규  
정하여 점용허가할 수 없는 사항을 명  
확히 규정하였고,
- 점용허가기간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 
계속 점용코자할 경우 기간만료전일  
30 일전에 신청토록하고 점용품의 관리  
는 시장이 허가대장을 만들어 관리감  
독토록 하였음.

○또한 녹지관리의 기준을 제 8 조에서  
규정하였으며 점용에 따른 점용료납부  
기준을 제 9 조에서 규정하였음.

3. 중요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의원	질의내용	답변내용
양재오	○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 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는지? 또한 입법에 고는 되어있 는 것인지? ○중동신도시 의 공원 및 녹지현황은?	○부천시 공고제 107호 ( '91.6.4 ) 로 시, 구 동 게시판에 6.29 까 지 26 일간 게시했으 며, 공원용지 대부분 이 사유지로서 불이익 을 받는 시민은 없음.  ○총면적은 43 개소 426,829 ㎡이며 어린 이공원 21 개소, 근린 공원 12 개소, 녹지 1 10 개소로 계획되어 있음.  ○건설부 고시가람 적용
	○공시지가는 내무부, 건 설부, 국제 청중 어느것 을 적용? ○'91 공원관리 예산은 얼마?	○27 명의 관리인이 관 리를 하고 있으며 인 건비 109 백만원 수 선비 기타가 49 백만 원등 총 158 백만원이 개상되었음.  ○없음.
윤호산	○현재 부천시 의 공원현황 은?	○총 81 개소 4,959,806 ㎡로서 어린이공원 60 개소, 근린공원 20 개소, 도시 자연공 원 1 개소가 있으며 이 중 어린이공원 37 개소

	<p>○부천시 소유 공원용지는 얼마?</p>	<p>와 근린공원 1개소는 기조성되어 이용중에 있는 중앙공원내의 원미동 14번지 일원 은 레포츠공원시설로 조성중에 있음. ○총 80개소 699,390 ㎡로 전체공원의 13.46%임.</p>
전 만 기	<p>○시유지로서 미조성된 공 원현황은?</p>	<p>○심곡 1동 652-2번지 심곡동 186번지가 미 조성되었으나 심곡 1 동 652-2번지는 전해 완씨와 지상물 철거관 개로 소송 개류중에 있는 심곡동 186번지 는 원미국교운동장으 로서 현재로는 조성 의 어려움이 있음.</p>

4. 토론유지

- 가. 반대토론 : 없음.
- 나. 찬성토론

의원명	주요내용
양재오	<p>○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점용허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동조례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밝힌 바와같이 제 9조에 "점용면 적의 재산가격은 개별지가에 의한 공사지가에 의한다" 라고 제 4항을 추가하여 재산가격에 대한 평가기 준을 명확히 해야하며 별표 5목 의 점용료율 <math>\frac{5}{100}</math> 른 <math>\frac{10}{100}</math> 으로 고쳐 타법률 (산립법 시행령) 에서 정한 바와의 형평을 갖춰야 할것</p>

의원명	주요내용
	<p>이며 별표 9목의 점용료율 <math>\frac{5}{100}</math> 도 <math>\frac{10}{100}</math> 으로 고쳐 전기 통신설비 및 전선료에 적용하 는 점용율과의 형평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 수정안을 제출</p>
윤호산	○수정안에 동의
이갑산	○수정안에 동의
전 만 기	○수정안에 동의

5. 수정안의 요지

- 가. 제안일자 : 1991년 10월 16일 제 1차회의
- 나. 제안자 : 양재오의원
- 다. 수정이유 : 찬성토론에 기재된 내용과  
같음.
- 라. 수정주요골자

- 동 조례안 제 9조 제 3항 다음에 제  
4항으로 "점용면적 재산가격은 개별  
지가에 의한 공사지가에 의한다" 의  
24자의 추가조항 신설
- 별표 5목 및 9목의 점용료율  $\frac{5}{100}$   
를 각각  $\frac{10}{100}$  으로 수정

6. 심사결과

- 수정가결

◆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  
고서심사결과◆

1991. 10. 17.  
지역개발경제발전위원회